

제422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6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17)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상정된 안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2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2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2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2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2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2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2
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2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17)	2
1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2
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3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보임된 박수민 위원 계신데 좀 늦게 오신다니까 오시면 잠깐 시간 내서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은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17)
1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4시05분)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심의하고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각각 인쇄업, 출판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의 폐업신고를 현행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업신고 등은 그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추세이고 이 업들의 폐업은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10항까지 7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7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7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관련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 등의 폐업 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게임제작업자 등의 폐업 미신고 시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30조 1항 단서 중 인용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해 ‘제35조, 36조, 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으로 수정하고 기간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괄호로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국세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보 제공의 근거 관련 ‘국세기본법 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안 부칙 제3조에 제26조에 부합하게 일반게임제공업 이외에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6항과 7항 관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도 수정 전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수정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 등을 수정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9쪽 보시면 안 제19조 6항으로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 등과 같이 등급분류 이후 개·변조를 통해 불법 PC방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은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내용 수정 간소화를 빌미로 불법 개·변조가 용이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은 박정하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안 제8항으로 사전신고 후 수정 내용 제출의무를 신설해 신고 내용과 반영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김윤덕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안 제2의2호 및 2의3호로 변경신고의무 및 사전신고 후 수정 내용 제출의무 위반 시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6항과 8항 관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도 다른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와 같이 민간기관인 등급분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로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을 보시면 안 제24조의3 중 등급분류 거부 결정 시 그 사유 제출을 근거 제출로 변경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임직원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며, 의사 결정 회의록 작성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은 박정하 의원님 안이 타

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9항 관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요건 중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규정을 삭제하며 사업자 지정 대상 업종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완화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체등급분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신청 시기에는 재지정심사로 갈음하려는 내용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하며 참여사업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 42쪽을 보시면 가목 중 게임물 관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청 난립 우려를 반영하여 현행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10항 관련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정하여 허용된 경품의 제공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되며 청소년유해물 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의 경우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게임물 이용에 따른 결과물로 제공된 경품의 환전 등을 허용함으로써 게임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다음 49쪽을 보시면 개정안 28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개정안 제28조의2제1항 2호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문체부가 개정안과 같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품 제공을 금지하게 되면 규제 당국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게임 이용 결과 획득한 경품의 환전 허용은 일본의 속칭 파칭코 등 사례와 같이 우회적인 방식의 불법도박 발생 우려가 있으며, 최근 청소년 온라인 사이버 불법도박 확산 상황에서 청소년의 사행 심리를 조장하고 게임물을 통한 불법도박으로의 유인을 확대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항목이 좀 많아서 분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 자료 3쪽에 있는 1번 항목하고 4쪽에 있는 2번 항목하고 5쪽에 있는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관한 부분도 정부 측 의견이 없이 지금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 5번 항목으로 나와 있는 사행성 게임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전에 바다이야기 때부터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물의를 많이 빚어 온 바가 있고 특히 이게 경품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라는가 아이템 구매 유도하는 부분들, 또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해킹 쪽이라든가 아니면 오토, 대리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접근할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윤덕 의원님 안과 박정하 의원님 안에…… 이게 질문과 보충설명 요청사항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두 가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게임물 내용 수정이 기준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때라고 하는 것을 다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이 경미하더라도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을 수 없는지, 또 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금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한번 요청드려 볼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사행성 모사 게임물이라든지 아케이드 게임물 같은 것은 직접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그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관리를 보다 강화해서 하도록 하는, 그리고 대부분 지금 구체적인 것들 위임을 해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적인 그런 관리만 잘 수행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박수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현 위원 예, 뭐……

○소위원장 박정하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품 제공 관련해서 그동안 바다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던 건 저희도 아는데 어차피 이게,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큰 취지도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도 우려하는 부분은 경품의 환전 허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지금 정부는 우려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직접 듣고 싶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게 약간의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업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정책 변화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의지가 있다, 앞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틈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게임업계 쪽에서 관련된 게임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예전과 같이 무슨 상품권 개념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암호화폐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이 경품 내지는 이런 보상체계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일

단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로 정책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 못했던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규제장치를 만드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 위원님.

○**이기현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전에 바다이야기가 끼친 해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놨던 큰 해악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차관 얘기하셨듯이 이게 예외적 허용,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일부에서는 환전을 허용한다고 하면 정부 기조의 큰 변화로 느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암호화폐가 이제 보편화돼 있는 상황,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문제부가 아니면 경찰이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도 단속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신동욱 의원님 법안 관련해서는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이 표현 하나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큰 사회적 분란, 논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 있으신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 위원님.

○**조계원 위원**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관련해서요 기본적인 민간 자율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간을 지금 5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긴 기간을 부여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3년 이내.....

○**소위원장 박정하** 줄였으면 좋겠다?

○**조계원 위원** 예. 물론 재지정은 5년 이내 정도로 그대로 하고 첫 번째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존 법률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심사받으면 되지 않나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현재도 법 26조 2항에 따른 단서를 적용하면 이미 이 부분은 허용이 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나 추가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품 환전 부분은 제2의 바다이야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선 김재원 위원 말씀 전에 그 기한을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저희는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간에다가 좀 위탁을 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3년 정도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관이라면 한 5년 정도로 좀 기간을 여유롭게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일단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 우선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김재원 위원님……

○**강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견 보태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정하** 예.

○**강유정 위원** 강유정입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게 이를테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 요건 같은 것들을 좀 더 완화하자는 건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업계의 매출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3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완화보다, 업계가 지금 사실상 변화가 굉장히 예측도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와중에 오히려 3년이…… 엄격하게 좀 더 요건을 부과하는 게 합당할 듯하고요. 그러니까 재지정 기한은 유지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부가통신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5년 현재 벌써 1만 5000여 개 정도 통신사업자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율성 확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기존 법률에 따라서 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같은, 등록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심사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일단 기간만큼은 아직은 3년으로 지키는 게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절충안을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유지를 하되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그 사업자가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검증이 되니까 재지정 기간의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3년, 그다음부터는 5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5년 이내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수석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조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3년, 5년이 나름 합리적이지 않은가……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도 충분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견 없습니다. 3년, 5년으로……

○**김재원 위원** 저도 지금 차관님 말씀하셔 가지고,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5년 이내? 5년 이내로 규정해서 쓰자 이거지요?

○**이기현 위원** 이내가 가능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지금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예, 김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재원 위원 박정하 위원장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면 교육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있는데 20시간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늘어나게 되는 건지, 10시간 교육해도 충분한 것을 20시간 교육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인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시간을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시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해야겠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예, 실무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말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준에 그냥 10시간 교육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면이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신동욱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역시 사행성 논란 부분에 있어서 바다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랬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옥죄고 개방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이 거기에 또 해 보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어두워지고 더 밑으로 들어가고 혹은 해외의 불법 유사사이트에 접속하고 그렇게 즐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는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부모님하고 5살 때부터 카지노를 같이 다닌 입장인데요. 그냥 주신 돈 가지고 남들이 당기는 슬롯머신 당기고 나면 비디오방에서 동생하고 손 잡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비디오 보고 놀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도박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둬 놓고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호기심이 더 증폭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더 그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불법도박부터, 또 우리 현지 내국인들도 정선밖에 카지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사카, 홍콩, 마카오 내지는 라스베이거스 이런 데로 돈 쓰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또 인바운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신동욱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더 주실 말씀 없으시지요?

논의는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안 정리하실 때 아까 기간,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챙겨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1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무규정임을 명확하게 하고 연 1회 이상의 협의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설치·운영되던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제한조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두 박물관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등 박물관 추진 사업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다만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 부속기관 및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소속기관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정부조직 법령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행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에 설치 근거를 명시하면 당연히 대통령령인 직제에도 규정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견 없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체부 법 외에도 국립항공박물관이라든가 농업박물관, 해양박물관 등 타 부처의 국립박물관 경우에도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굉장히 다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의견 제기한 것은 조금 무리한 의견 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서 박물관 사업이나 미술관 사업이 어려워졌던 그런 국립박물관이, 국립시설이 있습니까? 질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거나 심각한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저희가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들 때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해서 그다음에는 특수법인 형태로 법적 근거를 갖는 경우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국립시설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법으로 이 기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라고 저희가 좀 더 위상 면에서 확실하게 홍보를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되는 예외조항 적용 부분 이슈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이런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립역사박물관하고 한글박물관 2개만 끼워 넣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외에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하나가 더 있는 게 문자박물관 경우가 있는데요. 문자박물관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가 이쪽에서 아직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희가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만 먼저 이번에 근거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가요? 특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편향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역사박물관까지 굳이 법률안에 이렇게 넣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러면 다 하든가 아니면…… 산발적으로 2개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다른 문자 뭐가 있다고 그러셨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문자박물관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박물관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국가기관으로 설립된 게 아니라 일반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법적 성격이 다른 부분이……

○**이기현 위원** 그러면 국립 자 들어간 건 다 들어간 겁니까, 지금 여기 법률안에? 6개 플러스 2개 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희가 원래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는 이미 근거법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안을 만든 부분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시 컬렉션이나 전시물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현재 산업 역사박물관 성격의 분관과 민주화운동 역사관 성격의 분관을 설치하는 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2개의 안을, 구미 지역하고 광주 지역에 설치하는 형태로 실무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분관 형태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시라든가 컬렉션 부분을 좀 수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말씀은 이해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운영과 관련돼서, 특히 기관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운영에 있어서 편향이 있었던 것 관련돼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분들 의견은 없으신가요?

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운영하면서 문체부에서 잘 챙겨 주세요.

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계원 위원** 다른 문체부 소속기관 간에 법적 지위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그런 개연성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특별한 그런 문제는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조계원 위원** 그래요?

○**이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특히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시하는 과정에서 100년 통사, 작년에 있었던 건데 이 과정에서 일제 미화도 있었고요. 또 5·18을 반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전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 관련돼서, 독립적인 박물관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문체부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저는 이게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정치적 편향이, 정부는 왔다 갔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꼭 저희 민주당 정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히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역사 왜곡 이슈가 항상 있는 과정에서 꼭 이렇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특히 고대사나 근대 이전 역사가 아니라 현대사에 관련된 것을 다루다 보니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라든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비판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쟁이 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자라는 그려한 논의가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역사와 산업 역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관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된 부분도 그런 배경에서 저희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그런 논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 번만 좀 순연하시고요 다음에 이것 관련돼서, 이렇게 그냥 바로 넣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문체부가, 국립역사

박물관 관련돼서는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편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박물관의 답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면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런데 이게 새로 박물관을 신설하거나 어떤 사업을 만드는 이슈가 아니고 10년 이상 운영되어 오는 기존에 있는 기관의 법적 지위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근거법에 대해서는…… 이게 논의가 일단 시작이 되었을 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대책 방안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조계원 위원 어쨌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실질적인 업무 운영과 행태, 활동 이런 것들이 역사적 편향성이 이미 몇 차례 노출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국가적인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편향성들이 국가적 공인을 받는 그런 오해가 발생할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에 어떻게 하면 편향성을 좀 배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소위원장 박정하 정연욱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정연욱 위원 근거법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크게 이의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 부분들은, 이게 굳이 자연될 사안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향성 문제는 어차피 차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다음에 소위 때 한번 제출하시는 걸로 하고 개별적으로 해당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것은 자연시킬 사안인지 아니면 다음 회의 때 그대로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게 무조건 끌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법령이 이상, 이 법안 자체가 편향성을 띤 것은 아니니까 저는 한번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충분히 말씀 주신 거지요?

위원장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하고 조 위원님하고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법적 지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미술관하고 박물관 건도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법안소위에서 오늘 심사를 넘기고 혹여 우리 전체회의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 법사위 같은 곳 넘어갔을 때 논의가 되는 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여기서 더 논의해 봐야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논의가 계속될 듯싶어서 위원장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현 위원** 차관님, 보고는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충분히 보고를 드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소위원장 박정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3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과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 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현재 운영 중인 돌봄센터 2개소의 이용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5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 4항이 국가, 지자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 사업의 재원 확보 노력규정을 둔 것에 대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아마 예술인이라는 범위나 기본적 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다만 이게 단순한 권고사항 정도,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법령으로 명시되는 순간부터 가해지는 것은 사실상 의무조항에 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아마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야별 예술인들이, 대개 이런 돌봄 사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20대에서 40대일 것 같은데, 한 10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형평성 문제를 그냥 단순히 넘길 수 있을 사안인지, 그러면 체육인이나—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만 속한다면—과연 그런 부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것은 단순한 참고·권고사항으로 그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법령으로 명시되는 한.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도 재정 압박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과연 이 부분까지도 시간상 이

런 식의 돌봄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여력이 가능한 건지 한번 좀, 과연 이게 단순히 법령으로 입법화될 사안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자녀 돌봄 사업은 제가 2009년에 담당과장일 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제기가 되던 제일 큰 요인이 대학로였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분들이 연극이 이루어지는 시간 자체가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혹은 연습 시간에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학로에 처음으로 아이 돌봄 시설을 만들게 됐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의 전반적인 평균 급여에 관한 부분들이 연 소득으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월 소득에 가까운 연 소득을 받는 예술인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복지서비스를 좀 늘려 나가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기준에 저희가 한 10년 이상 해 왔던 사업들이 이미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을 시키고자 한다라면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또 필요한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만들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또 기재부나 이런 쪽 협의를 할 때 보면 이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 가지고 예산을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확히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규정인데요, 사실은.

○소위원장 박정하 저도 정연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인의 범주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기준의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극인으로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미술인 혹은 영화인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대가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지역적인 서비스보다는 바우처 서비스로 좀 바뀐다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 복지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누가 예술인인가에 대해서 또 장르별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문학이나 사진이나 이런 영역은 일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겸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장르는 전업으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직역을 갖다가 소득으로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한 난점들이 있지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한 10여 년 운영을 하면서 예술인, 전문예술인을 분류하는 나름대로의 몇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유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도 의견 하나 드리면 이분들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직장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에서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예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현재도 창작인에 속하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대 보험의 기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보호장치도 저희는 받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일반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돈이 남으면 그냥 향유를 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자동차랑 반도체에 있어서 국가 매출의 상위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업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거든요. 주로 밤에 하는 일이 많거나 밤을 새는 일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주 52시간의 노동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박 3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반산업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도 늘어나야 하고 그리고 수출을 좀 더 늘리고 이런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러한 처우 개선도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생산 능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창작 능력도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복지를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는 편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부분이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강유정 위원님.

○**강유정 위원** 강유정입니다.

소위 자료 마지막 8페이지 보시면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한데요. 2021년 이용 현황이 150명, 22년 178명, 23년 234명, 24년 306명, 지금 고작 3년 사이에 2배 규모로 이용 인원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 돌봄을 맡길 수 있는 두 군데의 장소를 보아 하니 되려 확장 지원하고, 이 수요와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국가적인 지원과, 그리고 초저출생이 지금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술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혹은 예술인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기초적인 논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2009년에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라는 취지라고 본다면 더 늘려야 되지, 이 정도 입법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말씀하세요, 박 위원님.

○**박수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성에 공감하고 또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술인 돌봄센터 이 두 곳 예산이, 2024년에 센터 두 곳 운영비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회 과정에서 증액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예지 의원안은 기왕에 국회에서 증액해서 반영이 돼 왔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반영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문화예술인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 폭발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법안이 최종 마무리가 되고 통과가 되면 정연욱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4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하고 발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함과 동시에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문체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문체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의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발굴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4쪽을 보시면 안 제9조의2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서훈·표창 건의의 특례를 개별 법에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서훈 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포상 신청 결과 국가보훈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안된 것인데, 문체부는 독립유공 서훈을 다루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진행 상황과 서훈 관련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고,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의 공적 유무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훈에 관한 사항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행안부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개별 법률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독립유공 서훈 건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안 제9조의2 전단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문체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체계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후단 문체부장관이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입법례가 없고 전달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체부장관 또는 문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경우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며 유사 법령도 존재합니다.

어제 보내 드린 소위 자료 초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수정의견란 안의 박스를 보시면 ‘문체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건의할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로 조문화해 놓았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여부에 관한 국가보훈부의 자문 경과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찬반 논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21대 국회 유사 법안 발의 및 심사 현황이 정리되어 있고,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1895년 을미의병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1년 차이에 불과하므로 서훈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 등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검토의견에, 당초 안 만들었던 부분들에 동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오늘 수정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법체계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행안부하고 보훈부 쪽에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명확하게 정부부처에서 권한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체부 쪽의 법안에서 이거를 다루는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라는 명확한 두 개 부처의 의견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게 내용적이고 실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1894년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관점에 관한 걸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안이 지금 정무위에서 소위까지 넘어가 있는 게 지난해 2024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유사한 다른 법률 2~3개가 지금 정무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위에서는 이거를 미리 조정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정무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번 소위 때 한번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박수현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는데 정부가 좀 유연한 역사 인식 또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학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행안부와 보훈부 그다음에 문체부 사이에 의견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내용은 이것을 서훈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무위나 행안위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곳에서 따지도록 하고 다만 우리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부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문체부 소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듯한 그런 소극적 입장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서훈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부에서 만든 법률의 내용에 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라고 우리 소관의 법률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봉기와 1차 봉기를 섞어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1차 봉기까지 의미를 넓혀 가지고 이 2차 봉기에 대해서 서훈에 그렇게 소극적 입장을 갖는 것은 매우 역사 인식이 부족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든 흐름들은 전부 이 2차 봉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훈해야 한다,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견들, 학설들로 지금 계속 자리잡혀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학자들도 이 2차 봉기는 일제가 맞이한, 동아시아에서 맞이한 최초의 어떤 구조적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운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보훈부 입장은 1904년, 1905년 이런 러일전쟁과 우리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이런 것으로만 지금 독립운동의 기점을 보고 있다가 1895년 일어난 그런 을미의병에 대한 그것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까지 겨우 왔는데 그 바로 몇 달 차이인 1894년 9월에 봉기했던 2차 봉기, 우리 위원회 소관의 법률도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고 지금 대다수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훈부는 전혀 반영할 의지가 좀 부족한, 경직돼 있는 입장을 지금 63년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서훈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해당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것과 관련이 있는 우리 문체부장관을 경유하여 보훈부장관에게 건의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나 몰라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특별법을 만든 우리 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 부처와의 어떤 충돌 문제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말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우리 국회의 입법조사처에도 질의를 했어요.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1894년 9월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도 이 문제는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런 기관장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인식의 문제는 또 서훈 자체는 뒤로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훈부장관에게, 그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하는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하는 것인데, 이 법을 관장하는 문체부장관을 그것도 경유해서 하자는데, 지금 원래 원안에는 이것을 ‘문체부장관은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낮추고 낮추고 더 완화해서 건의하는데 문체부장관을 경유해서 건의한다, 경유와 건의가 지금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서훈하자고 결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는 이 법을 관장하는 문체부에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여튼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느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 최소한의 문체위의 참여, 동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고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사학도이신 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보훈부나 이 국권 침탈에 대한 시기 문제는 이미 현재까지 어느 정도 다 핵스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절차상 부분들은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지만 학설이라는 부분들은, 역사의 평가라는 게 법률로 입법화되는 부분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입법으로 정하는 부분이, 역사의 평가라는 것을 입법의 재단에 맡긴다는 건 상당히, 그래서 역사의 평가는 언제든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모든 걸 입법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동학농민 2차 봉기라는 부분들이 과연, 청일전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고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과 청국 간의 관계가 또 바뀌고 조선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평가를 가지고 입법으로 들어가는 부분, 엄연하게 그게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이 입법하는 문제까지 가야 될지 또 역사적 평가를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보훈부나 행안부나 부처 간의 의견이 있고 절충 과정이 남아 있고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관련 입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논의 중인 것이고.

그래서 입법의 문제가 왜 신중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 평가에 대한 논란 부분들을 저희가 입법으로 지금 당장 재단할 문제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박수현 위원님 더 말씀 주세요.

○박수현 위원 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성격을 여기서 규정하자거나 그에 따라서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하자거나 서훈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 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처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다루는 관련 부처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그런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에 최소한의 어떤 의견을 내는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훈이나 이런 걸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서 보훈부장관에게 건의를 하는데 그것을 관련 부처인 문체부장관을 경유해서, 관련 부처를 경유해서 건의하자. 경유와 건의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마저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 부처로서 굉장히 너무 방기하는 것 아닌가라

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영향도, 서훈 자체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최소한 갖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 서훈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다른 부처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절차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면 1894년 1차 봉기는 3월에 소위 반봉건에 저항하기 위해서 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성 점령 이후에 전주성화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동학농민군은 다 해산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7월에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점령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일본군이 강제로 우리 조선의 경복궁 초병들을 해산시키고 고종 임금을 경복궁에 거의 유폐시키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니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그 해 1894년 9월에 다시 봉기를 해서 완전히 이것은 반봉건이 아니라 반외세의 투쟁을 벌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과정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인정하고 있고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

심각하게 국권이 침탈되고 있던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욱 확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지, 63년째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하면서 어중간하게 다녔던 사학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왜 해요? 행정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정 위원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사학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박수현 위원** 제 주장이 그겁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왜 역사 이야기를 해 가지고 헛갈리게 해요?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추천에 대한 그런 특례규정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제가 얼마 전에 20 대들의 역사관을 얘기를 들어 봤는데 진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게 교육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가 법안으로 만듦으로 해서 그러한 역사의식을 좀 더 투철하게 하고 타 부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끌어 가는 그러한 상임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전문위원, 지금 수정의견 보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간 이게 지금 최종 수정의견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아니, 제가 그냥 초안으로 만든 겁니다.

○조계원 위원 이게 초안이고 이 의견을 지금 최종 입장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상훈법하고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문체부는 서훈을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훈부가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이 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건의를, 다만 주무부 장관인 문체부장관을 경유해서 건의하는 건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봐서 제가 일종의 절충안으로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박수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절충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정부 측의 우려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포용한 또 고려한 수석전문위원의 절충 수정 제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박수현 위원님, 30초 말고 더 말씀하셔도 돼요.

○박수현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 하셨어요?

○박수현 위원 예.

○소위원장 박정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요……

○소위원장 박정하 예,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박수현 위원은 사학도가 아닙니다. 사학대학 다니다가 잘린 분이에요. 왜 자꾸 사학도를 이야기해 가지고 헛갈리게 해요?

○소위원장 박정하 박수현 위원님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 절절한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무위에서 지금 이 상훈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계류를 했다가 다음 법안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 소위 아니면 상임위 전체의 이름으로 정무위에 우리가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무튼 박수현 위원님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마음은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배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보충의견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예,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박수현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난번에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전시회에도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고 그때 윤준병 의원님도 뺐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894년의 2차 봉기에 관한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정무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한 번만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이다라거나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위원 다음 소위 때는 적극적 자세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차관님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죄송해요. 국가유산청 최보근 차장 와 계신 거 말씀 못 드렸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최보근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수석님, 말씀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3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15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전국 14곳의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의 보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 및 영향진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개발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사전영향협의 제도와 유사한 사전협의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4쪽을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시 현상변경 신고·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안 제38조의2제2항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는 등록문화유산과 같은 현상변경 신고·허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 있는 등록문화유산의 경우에도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구체적인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타당한 의견으로 보이므로 삭제하고 이에 따라 안 제1항 중 괄호 안의 약칭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조계원 위원 제가 발의했는데요……

○소위원장 박정하 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원 위원 그 안 삭제 부분은 동의하고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 위원님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조계원 위원 예.

○소위원장 박정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6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제한구역에 학술연구, 관리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보수·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보존·활용 사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이기현 위원님께서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공개제한구역에 사업행위 허용 등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자연유산 관리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지자체 활용 사업을 통한 훼손 우려를 고려하여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사유를 제한하고 제한 사유 중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법 23조 3항에 따른 공개제한 고시 내용에 자연유산 공개제한지역 보존·활용을 위한 출입허가 행위를 열거하고 열거된 행위 외에는 출입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의 편의를 위해 수정의견란 안의 박스를 보시면 국민들이 출입허가 사유의 대강을 법률만을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법률에 공개제한지역 출입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위임하는 안으로 현행 학술연구, 관리실태 조사 외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을 조문화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허가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조항을 제안을 주셨는데 그 경우에 저희가 더 명확하게 관리 대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과 저희 정부 의견은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인데, 한 번의 제한 장치를 더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정하게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존 승인된 사항에 한해서 출입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더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가유산청 최보근 차장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유정 김재원 박수현 박경하 양문석 이기현 정연옥 조계원

○첨가 위원(1인)

박수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정책기획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문화유산국장 이종희